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41-1996-548058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4-4 제1,2,3층 제나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82년11월 일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4-4	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97.98㎡ 2층 197.98㎡ 3층 197.98㎡ 옥탑 24.30㎡ 지층 197.98㎡	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06일 전산이기
2	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4-4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18	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층 197.98㎡ 2층 197.98㎡ 3층 197.98㎡ 옥탑 24.30㎡ 지층 197.98㎡	도로명주소 2019년12월9일 등기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4-4	대	309.4㎡	1987년1월27일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06일 전산이기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4-4 제1,2,3층 제나호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				
표시번호	접 수	건 물 번 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1)	1982년11월9일	제1,2,3층 제나호	철근콘크리트조 1층 98.99㎡ 2층 98.99㎡ 3층 98.99㎡ 옥탑 12.15㎡ 지층 98.99㎡	도면편철장 제5책제493장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06일 전산이기
(대지권의 표시)				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	
1 (전 1)	1 소유권대지권	2분의 1	1987년1월27일 대지권 1987년1월27일	
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06일 전산이기	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3)	소유권이전	1988년5월17일 제37484호	1988년3월23일 협의분할에인한 재산상속	소유자 이해준 581022-*****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4-4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06일 전산이기
2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25일 제3882720호	2025년7월25일 서울북부지방법 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5타경129 86)	채권자 손수진 701101-*****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30, 136동 1405호(영천동, 동탄파크한양수자인)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4-4 제1,2,3층 제나호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

열 람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열람일시 : 2025년11월20일 16시23분33초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의 사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41-1996-548058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34-4 제1,2,3층 제나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이해준 (소유자)	581022-*****	단독소유	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4-4	1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구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2	강제경매개시결정	2025년7월25일 제3882720호	채권자 손수진	이해준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